

# 정 관



2020. 11. 26.

학교법인 을지학원

# 목 차

제1장 총 칙 .....	1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 산 .....	1
제2절 회 계 .....	2
제3장 기 관	
제1절 임 원 .....	2
제2절 이사회 .....	5
제4장 수익사업 .....	6
제5장 해 산 .....	7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 원	
제1관 임 명 .....	7
제2관 신분보장 .....	9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	12
제4관 교원징계위원회 .....	13
제2절 사무직원 .....	15
제7장 직 제	
제1절 법 인 .....	16
제2절 대 학 교 .....	16
제3절 전문대학 .....	18
제4절 정 원 .....	18
제8장 대학평의원회 .....	19
제9장 보 칙 .....	20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	30
<별표 2> 을지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	31
<별표 3>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일반직원 정원 .....	32
<별표 5>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일반직원 정원 .....	33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의학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을지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을지대학교를 설치·경영한다.(개정 2007.1.11)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302의 1에 둔다.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14., 2012.10.25.)

## 제 2 장 자산과 회계

### 제 1 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 2 절 회 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일 까지 한다.

**제12조의2 【예·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학교 및 법인의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에,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전에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시한다.(신설 2007.1.11)

② 연도중도에 예산을 추가 또는 개정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성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7.1.11)

③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7.1.11)

## 제 3 절 예산·결산 자문위원회

제13조 내지 제17조 <삭제 2007.1.11>

# 제 3 장 기 관

## 제 1 절 임 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 10인 (개정 2011.1.12)

2. 감 사 : 2인 (1회에 한하여 중임가능) (개정 2009.1.16)

② 이사 중 3인은 개방이사로, 감사 중 1인은 개방형감사로 선임한다.(개정 2011.1.31)

③ 삭제(삭제 2010.12. 2)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 사 : 4년
2. 감 사 : 2년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임원 선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단,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개정 2009.1.16)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삭 제)

**제20조의2 【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 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14)

②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개정 2008.1.14)

③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신설 2020.11.26)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제20조의3 【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회에 둔다.(신설 2008.1.14)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7.1.11)

③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당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 개방이사는 이사정수의 4분의 1로 한다.(개정 2007.1.11., 2020.11.26.)

1.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에서 교원,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경험

④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라야 한다. 다만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1.14)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7.1.11)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신설 2007.1.11)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신설 2007.1.11)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신설 2007.1.11)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07.1.11)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8.1.14)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5.3.18)

③ 이사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 이외의 상근하는 이사(상임이사)를 1인 이내로 둘 수 있다.(개정 2013.4.12. 2015.3.18., 2015.4.24)

**제2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이 법인의 직원(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6조의 2 【임원의 보수】** ① 법인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상근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 한다.(신설 2013.3.20)

1. 이사장
2. 상임이사 1인(개정 2013.4.12, 2015.3.18, 2015.4.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와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3.3.20)

## 제 2 절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와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와 회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

회 하지 못한다.(개정 2007.1.11)

② 이사회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1.14)

**제28조의2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8.26., 2020.11.26.)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 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 【이사회 의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7.1.11)

## 제 4 장 수익사업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업
2. 의료업
3. 주차장업



4. 장례식장업(관련 음식 및 매장 포함)
5. 음식점 · 매장
6. 광고대행업(개정 2007.7.1.)
7. 화석, 광물, 귀금속 등의 전시·판매업(개정 2013.11.28.)
8. 위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부대사업(개정 2007.7.1)

**제33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체를 유지·경영한다.

1. 을지재단빌딩 사업소(개정 2008.7.15)
2. 을지병원 장례식장 사업소
3.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사업소(개정 2019.10.24)
4. (삭제 2013.3.20)
5. 강남을지대학교병원 사업소(신설 2012.7.25, 개정 2019.10.24)
6. (삭제 2020.7.30)

**제34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3조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지재단빌딩 사업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302-1(개정 2008.7.15)
2. 을지병원 장례식장 사업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280-1
3.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사업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06(개정 2019.10.24)
4. (삭제 2013.3.20)
5. 강남을지대학교병원 사업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9(신설 2012.7.25, 개정 2019.10.24)
6. (삭제 2020.7.30)

**제35조 【관리인】** ①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제 5 장      해      산

**제36조 【해 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38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9.1.16)

## 제 6 장 교 직 원

### 제 1 절 교 원

#### 제 1 관 임 명

**제39조 【임 용】**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8.1.14., 2019.06.20.)

② 학교의 장 이외의 학교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개정 2019.06.20.)

#### 1. 근무기간

가. 교 수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개정 2012.8.16)

2. 급 여 :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및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임면권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항의 제1호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④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⑤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개정 2007.1.11)

⑥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 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06.20.)

⑦ 대학교의 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2007.1.11.)

⑧ 제2항에 정하는 전임교원 이외의 대학교의 강사,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임용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신설 2019.06.20.)

⑨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 징계 등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06.20.)

**제39조의2 【종전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교 수 : 정년까지
2. 부 교 수 : 6년
3. 조 교 수 : 3년
4. 삭제 (삭제 2012.8.16)

**제39조의3 【임시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 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40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0.12. 2., 2019.06.20., 2019.08.22.)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9.08.22.)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 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개정 2019.08.22.)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 2019.08.22.)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신설 2019.08.22.)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신설 2008.1.14)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신설 2019.08.22.)

**제41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 2)

1. 제40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40조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0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0조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0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개정 2020.11.26.)
- 6의2. 제40조 제7의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19.08.22.)
7. 제40조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0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0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0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신설 2019.08.22.)

**제42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3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 ② 제40조 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08.22.)

**제44조 【직위해제】**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略式命令이 請求된 者は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 ⑦ 삭제(삭제 2016.10.6.)  
(전면개정 2016.8.26)

**제44조의2 【면직의 사유】** ①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면직시킬 수 있다.

[조 신설 2016.10.6.]

**제45조 【보 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

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③ 삭제(삭제 2016.8.26)

**제46조의2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 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46조의3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7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하되, 대학교의 경우 이 조에서 강사 및 겸임교원 등을 포함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1.11., 2019.06.20.)

**제4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의 장이 교원을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9.06.20.)
2. 학교의 장이 부총장 등의 보직을 임명 제청하고자 할 때의 보직 임명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제39조 제2항 제4호를,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대학의 재임용 규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이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7.1.11)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9.06.20.)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 및 공개전형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9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0.12. 2)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9. 6 .1 )

**제50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개정 2018.8.23.)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한다.

**제53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4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5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6 .26 )

**제56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제57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8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 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8조의2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8조의3 【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06.20.)

**제59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0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06.20.)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8.26., 2019.06.20.)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1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1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8.26)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학교의 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개정 2019.06.20.)

**제63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 3 절 재심위원회(삭제)

제64조 내지 제77조 (삭제)

### 제 4 절 사 무 직 원

**제78조 【자 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술직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4.04.24)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4.04.24)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79조 【임 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80조 【복 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 【보 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0.6)

**제82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 7 장 직 제

### 제 1 절 법 인

**제84조 【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운영본부를 둔다.(개정 2009.1.16., 2015.9.17)  
 ② 삭제(삭제 2009.1.16)  
 ③ 재단운영본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개정 2011.12.22., 2015.3.18., 2015.9.17)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제와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9.17.)

### 제 2 절 대 학 교

**제85조 【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의무부총장 및 대외부총장을 둘 수 있고, 각 캠퍼스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10.12. 2)  
 ④ 각 캠퍼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여 각 캠퍼스 전반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개정 2009.1.16)  
 ⑤ 총장이 유고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 자 또는 각 캠퍼스 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6조 【학장·대학원장 등】** ①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학장

과 대학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학장과 부원장을 둘 수 있다.

-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 ③ 부학장과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 ④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87조 【대학본부】** ① 총장 직속기구로 감사실을 둔다.(신설 2016.12.28., 개정 2018.8.23., 2019.06.20.)

- ② 대학교 각 캠퍼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획조정처, 교무처, 학생처, 입학관리처, 사무처, 시설관리처를 둔다(개정 2011.12.22, 2012.10.25, 2013.07.18., 2015.9.17., 2016.12.28., 2018.8.23., 2019.02.21)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캠퍼스 별로 각 팀을 둔다.(개정 2009.1.16., 2016.12.28)
- ④ 각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참사 이상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주사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09.1.16., 2016.12.28)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처·팀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16., 2016.12.28)

**제87조의2 (삭제)** (삭제 2009.1.16)

**제87조의3 【처장 등】** ①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07.1.11., 개정 2018.8.23.)

- ② 제1항의 각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07.1.11., 개정 2018.8.23.)
- ③ 각 처 하부조직의 명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하며, 각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07.1.11., 개정 2018.8.23.)

**제88조 【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대학교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필요한 실, 과를 둘 수 있으며, 실장 및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7.1.11., 개정 2018.8.23.)

**제89조 【의료원】** ① 부속병원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의료원을 둔다.

- ② 의료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원장을 둘 수 있으며, 의료원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 ③ 의료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 운영 및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④ 기타 의료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전면 개정 2020.07.30.]

**제89조의2 【부속병원】** ① 부속병원으로 다음 각 호의 부속병원을 둔다.(개정 2019.10.24., 2020.07.30.)

1.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39-39(개정 2019.10.24., 2020.02.20., 2020.07.30.)

2. 대전엘지대학교병원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06(개정 2019.10.24., 2020.02.20., 2020.07.30.)
- ② 부속병원장은 교수로 보하며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20.07.30.)
- ③ 부속병원장은 총장(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병원운영 및 제반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0.07.30.)
- ④ 기타 부속병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07.30.)
- ⑤ 부속병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0.06., 2020.07.30.)
- [조 신설 2020.07.30.]

**제90조 【부속기관 등】**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과 부속시설(이하 “부속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③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1조 【학술정보원】** ① 대학교 각 캠퍼스에 학술정보원을 둔다.(개정 2011.12.22.)

② 학술정보원에 원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개정 2011.12.22)

③ 학술정보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술정보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1.12.22)

④ 학술정보원의 하부조직과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22)

**제91조의2 【산학협력단】** ① 대학교에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을 제25조에 의거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8.8.23)

③ 산학협력단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8.8.23.)

[신설 2007.1.11.]

**제91조의3 【창업지원단】** ① 대학교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의2에 의거 창업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창업지원단의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③ 창업지원단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주사 이상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창업지원단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8.8.23.]

**제91조의4 【보직임명의 예외】** 제85조 내지 제91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직은 교육 및 연

구업적이 뛰어나거나, 대학경영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년퇴직 교원 또는 외부 인사를 총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신설 2012.2.27., 개정 2018.8.23)

### 제 3 절 전 문 대 학

제92조 내지 제95조 <삭제 2007.1.11>

### 제 4 절 정 원

**제96조 【정 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별표2, 별표2-1 및 별표 3과 같다.

## 제 8 장 대학평의위원회 (신설 2007.1.11)

**제97조 【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8조 【평의위원회의 구성】** ① 평의위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2.21)

1. 교원 4명
2. 직원 2명
3. 조교 1명
4. 학생 2명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② 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99조 【평의원의 위촉 및 임기】** ① 평의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촉한다.(개정 2019.2.21)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2. 직원 및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대전 및 성남 캠퍼스 총학생회에서 각 1명을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학교의장이 위촉한다.

②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8조제1항3호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0조 【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101조 【평의원의 소집】** 평의원회는 이사장, 대학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응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제102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사항으로 한다.(개정 2008.1.14)

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3조 【운영규정】** 평의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9 장 보 칙

**제104조 【공 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지에 공고한다.(개정 2007.1.11)

**제10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6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장순준	이 사    이순애	이 사    장원식
이 사    조    훈	이 사    김인숙	이 사    박원익

감 사 안주봉                      감 사 유영서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전문대학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하되, 제33조의 명칭변경은 관계법령에 의거 별도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을지병원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의료법인 대전을지병원 소속직원은 이 개정 정관에 의하여 부속병원 소속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의료법인 대전을지병원 일반직원의 보직은 이 개정 정관에 의하여 부속병원의 당해 보직에 보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서울보건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서울보건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을지의과대학교는 교명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서울보건대학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또한 이 정관 시행으로 폐지되는 서울보건대학은 2009년 2월 28일(단, 2년제 과정은 2008

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서울보건대학 학생에 대한 조치】 서울보건대학 폐지 전 입학한 학생들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법령과 학칙 등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경우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에 따라 을지대학교의 유사 학과나 타 전문대학에 정원 외 편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
- ④ 【서울보건대학 교직원에 대한 조치】 폐지되는 서울보건대학 교직원에 대해서는 이 정관의 시행으로 을지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⑤ 【기타】 이 정관 시행 이전의 을지의과대학교 및 폐지되는 서울보건대학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을지대학교 총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사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법인 일반직원 정원 (개정 2014.04.24)

총 계                    24명

일반직계                21명

2급(참 여)             1명

3급(부참여)          2명

4급(참 사)             3명

5급(부참사)          5명

6급(주 사)             3명

7급(부주사)          3명

8급(서 기)             3명

9급(부서기)          1명

기술직계                3명

4급(참 사)             1명

5급(부참사)          1명

6급(기 사)             1명



(별표 2)

## 을지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개정 2014.04.24., 2020.07.30.)

총        계                    76명

일반직계                    64명

2급(참 여)                2명

3급(부참여)            2명

4급(참 사)                5명

5급(부참사)            6명

6급(주 사)                12명

7급(부주사)            16명

8급(서 기)                21명

기술직계                    12명

5급(부참사)            2명

6급(주 사)                2명

7급(부주사)            3명

8급(서 기)                5명

(별표 3)

##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일반직원 정원 (개정 2014.04.24., 2020.07.30)

총 계	1,244명
일반직계	169명
2급(참 여)	1명
3급(부참여)	1명
4급(참 사)	2명
5급(부참사)	1명
6급(주 사)	5명
7급(부주사)	12명
8급(서 기)	35명
9급(부서기)	112명
기술직계	855명
2급(참 여)	0명
3급(부참여)	1명
4급(참 사)	5명
5급(부참사)	9명
6급(기 사)	30명
7급(부기사)	95명
8급(기 원)	715명
9급(부기원)	0명
별정직계	220명
4급대우(전문의)	0명
5급대우(전문의)	40명
6급대우(전공의)	140명
7급대우(수련의)	40명

(별표 4) 삭제(삭제 2020.07.30.)

(별표 5)

## 의정부엘지대학교병원 일반직원 정원 (신설 2020.07.30)

총 계	746명
일반직계	47명
2급(참 여)	0명
3급(부참여)	1명
4급(참 사)	1명
5급(부참사)	4명
6급(주 사)	5명
7급(부주사)	8명
8급(서 기)	28명
9급(부서기)	0명
기술직계	659명
2급(참 여)	0명
3급(부참여)	2명
4급(참 사)	5명
5급(부참사)	11명
6급(기 사)	29명
7급(부기사)	72명
8급(기 원)	540명
9급(부기원)	0명
별정직계	40명
4급대우(전문의)	0명
5급대우(전문의)	40명
6급대우(전공의)	0명
7급대우(수련의)	0명